

『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(2012.08.23)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·관리하기 위하여, 구미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위원회의 개최방법 및 위원의 임무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- 회의 진행방법 및 의견청취, 회의록 작성(안 제5조 ~ 안 제7조)
- 현지조사와 서면심의, 간사의 임무(안 제8조 ~ 안 제10조)

4. 관련근거

-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 9
- 「산림보호법시행령」 제32조의7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,
산림보호법 제45조의 9, 2항(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)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,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또한,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대상지구의 적정성, 예방계획수립, 안전대책, 정비계획수립 등에 관한 위원회 기능이 있으며,
-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,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
- 위원은 산사태·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, 재난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,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,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 7, 3항 등에 명시되어 있음.
- 그 외 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,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총괄하는 산림경영과장이,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되도록 조례 안에 명시되어 있음.
- 위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으므로,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